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2. 9. 29 선고 2019가단5704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너스

담당변호사 이해권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웅지

담당변호사 김승규, 김지학

변 론 종 결 2022. 9. 15.

판 결 선 고 2022. 9. 29.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17.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접수 제579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29. C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06065호로 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10.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9.

2. 1. 확정되었다.

나. C은 위 소송계속 중이던 2018. 12. 13.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8. 12. 17.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접수 제5798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은 2019. 8. 21.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준재심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재가합1004)를 제기하였는데, 2022. 1. 28. 위 법원은 소송대리권 흠결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을 취소하고, 본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1. 피고(준재심원고) C은,

가. 원고(준재심피고) D, E, A, F, G에게 각 8,400만 원과 그 중 각 2,4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1. 23.부터, 각 6,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3. 28.부터,

나. 원고(준재심피고) H에게 9,600만 원과 그 중 2,4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1. 23.부터, 7,2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3. 28.부터,

다. 원고(준재심피고) I에게 7,200만 원과 그 중 2,4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1. 23.부터, 4,8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3. 28.부터,

라. 원고(준재심피고) J에게 9,100만 원과 그 중 2,6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2. 2.부터, 6,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3. 28.부터,

마. 원고(준재심피고) K에게 8,900만 원과 그 중 2,4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8. 22.부터,
6,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9. 19.부터,

바. 원고(준재심피고) L에게 8,400만 원과 그 중 2,4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8. 22.부터,
6,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9. 19.부터,

사. 원고(준재심피고) M에게 93,275,000원과 그 중 26,65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12.부터,
66,625,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31.부터

각 2018. 6. 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1, 12,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판결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원리금은 2022. 4. 4. 기준 1,550,963,635원이고, 그
중 원금 945,275,000원에 대하여 2022. 4. 15.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1일당 310,775원)이 가산되어야 하는데, C이 변제하지 않고 항소함에 따라 완제일이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으므로 지연손해금 액수가 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 밖에 C은 N조합 등 2명의 교부권자에게
364,264,98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은 최소
1,915,228,615원(= 364,264,980원 + 1,550,963,635원) 이상이라 할 것이다.

2) C이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고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은
1,577,022,000원이다.

3) 따라서 C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되거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도 C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C이 무자력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무자력 판단의 기준이 되는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은 원인행위 당시, 즉 이 사안의 경우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18. 12. 13.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의 소극재산

- 1) 이 사건 판결금 채무 원리금 : 1,162,727,554원이고(별지 2 참조)
- 2) N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원리금 : 327,483,862원(을 20호증, 다만 2019. 10. 23. 기준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 3) 합계 : 1,490,211,416원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C의 적극재산 : 1,577,022,000원(원고 자인 금액)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C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C이 무자력 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임대호

선정자명단

1. A
 2. D
 3. E
 4. H
 5. F
 6. G
 7. I
 8. J
 9. K
 10. L
 11. M
- 끝.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양평군

답 321㎡

2. 경기도 양평군

답 3,521㎡

이상

[별지 2]

[2018.12.13. 기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채권 원리금 산정표]

선정자	원 금	지연이자	합 계	비 고
	84,000,000	20,209,313	104,209,313	
	84,000,000	20,209,313	104,209,313	
	84,000,000	20,209,313	104,209,313	
	84,000,000	20,209,313	104,209,313	
	84,000,000	20,209,313	104,209,313	
	96,000,000	23,066,298	119,066,298	
	72,000,000	17,352,326	89,352,326	
	91,000,000	21,857,805	112,857,805	
	89,000,000	19,147,806	108,147,806	
	84,000,000	18,077,259	102,077,259	
	93,275,000	16,904,495	110,179,495	
합 계	945,275,000	217,452,554	1,162,727,554	

